

W:WOOSUNG

2024년 6월

주간 축산 이슈

# 뉴스클리핑

6월 3주차 HOT ISSUE

- 오물 풍선, 가축전염병 모두 음성
- 미국 5개 주서 AI 감염 젖소 잇따라 폐사

## 오물 풍선, 가축전염병 모두 음성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에 대한 가축전염병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합동 시료채취반을 구성하여 군에서 보관 중인 오물 풍선(30개)에서 130건의 시료를 채취하고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6종의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검사하여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축산부는 지난 5월 28일 에서 살포한 '오물 풍선'이 전국에서 발견되어 오물 내에 가축전염병 병원체 오염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축산 농장주, 근로자 등이 오물 풍선을 접촉하지 말 것과 발견 시에는 농장 주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 등을 홍보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방부와 협력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 오염 우려가 있는 '오물 풍선'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병원체 오염이 확인되는 즉시 발견 장소 및 주요 통행도로 소독 등을 철저히 하여 축산농장에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 5개 주서 AI 감염 젖소 잇따라 폐사



미국서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젖소가 회복되지 않아 죽거나 도태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젖소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3월 말부터 10개 주에 걸쳐 80개 이상의 무리에서 확인된 가운데, 5개 주에서 젖소의 폐사 및 도태가 발생하고 있다.

AI에 감염된 소는 우유 생산량 감소, 소화 장애, 발열 및 식욕 감소를 겪는다. 대부분이 경미한 증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일부 젖소는 2차 감염에 의해 죽거나 회복이 더뎠던 목장주의 판단에 따라 도태되고 있는 것.

실제 해당 주 중 미시간주에선 AI에 감염된 소 200여두 중 10%가 회복되지 못해 살처분됐다. 하지만 미국은 정확한 소 도태 건수에 대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AI 바이러스가 확산경로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현재 야생 조류에서 소로, 소에서 소로, 소에서 가금류로, 그리고 소에서 사람으로의 전염 사례가 있으며, 우유와 유선에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발견돼 과학자들은 이 바이러스가 착유 과정에서 동물에게 퍼지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 사육규모 작을 수록 낙농가 수익 격감

사육규모가 작을수록 낙농가 수익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생산비는 리터당 1천3원으로 전년대비 44원(4.6%)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원유기본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사육비(948만9천원) 대비 총수입(1천122만원)의 증가로 젖소 두당 순수익은 전년대비 20만1천원(13.2%) 증가한 173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젖소 두당 순수익을 사육규모별로 살펴보면 그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0두 이상 사육농가의 경우 지난해 젖소 두당 순수익은 212만원이었으나, 70~99두 사육 농가는 189만 9천원, 50~69두 사육농가는 105만8천원으로 낮아졌으며, 50두 미만 사육농가의 경우엔 30만4천원으로 100두 이상 사육농가와 7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문제는 이러한 50두 미만 사육농가가 전체 낙농가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50두 미만 사육농가 중엔 고령층에 후계자도 없다보니 규모를 늘릴 여력도 없어 현상유지를 하며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다.

작은 규모라도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법은 있다. 소규모 농가는 사육두수가 적은 만큼 사양관리에서 유리하다. 유전체 분석 등을 통해 고능력우 우군을 확보하고 번식관리 및 단계별 사양관리에 집중함으로써 경제수명을 늘리고 분만간격을 짧게 해 생산성을 높이면 알짜배기 목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럼에도 제한된 자원과 인력 문제를 극복하기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50두 미만 농가라면 착유우가 20두에 일평균 유량도 600~800kg 수준에 머물 것이다.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규모에 의한 한계는 있다. 또, 여러 이유로 목장 규모를 확대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도 있어 농가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가 있다”며 “공동 목장 개념으로 농가가 젖소를 위탁해 사육하는 방식을 통해 환경적, 육체적 한계에서 벗어나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흑돼지 등급제 도입되나



흑돼지 등급제 도입이 공론화 되고 있다.

제주도의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이해당사자인 제주 양돈업계가 농가들과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등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흑돼지 등급제 관련 협의회를 갖고 도입 여부와 기준에 대한 의견을 각계 수렴했다.

제주도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한한돈협회 및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한국육류수출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제주도가 별도의 흑돼지 등급판정기준 마련을 공식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내륙과 달리 제주도내 흑돼지 도축 비율이 30%를 차지하며 현재 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흑돈마크 부착만으로는 행정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백색돈과 구분되는 별도의 품질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위해 현행 등급기준에서 평균 도체중을 3~13kg 하향 조정하되, 등지방두께도 2mm 정도 낮추는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흑돼지 등급판정기준안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 흑돼지 등급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며 시범사업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다만 흑돼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은 현실에서 제주외에 내륙지역으로의 확대는 사전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제주한돈협회는 “흑돼지 등급제 도입과 관련한 사전 의견수렴은 물론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불거진 과지방 삼겹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주도측이 일방적으로 흑돼지 등급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흑돼지 사육농가를 포함한 양돈업계의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제주양돈업계 차원의 입장과 구체적인 기준안이 제시되면 각계 의견을 종합해 흑돼지 등급제 추진 여부와 함께 추진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양돈장 ‘냄새 배출원 단위’ 마련된다



가축분뇨에 이어 양돈농가에 대한 냄새 배출원 단위도 만들어 진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1억원의 예산을 투입, ‘양돈시설의 악취저감 기술’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가축분뇨 발효와 액비순환시스템 등 양돈시설 형태별 냄새 발생 특성 조사를 비롯해 ▲전국 양돈농가별 돈사 형태 및 분뇨처리 방식 조사 ▲냄새 민원 현황 및 냄새 모델링 실시 ▲가축분뇨 처리시스템 정착 및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한 양돈시설의 냄새 개선 방안 도출 등이 그 목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특히 현장 측정을 통한 돈사 유형별 냄새 원인 물질(복합악취, 지정냄새 물질 22가지, 페놀류) 농도 및 구성 비율 조사를 토대로 냄새 배출원 단위까지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양돈업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냄새 관련 규제의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한한돈협회 환경방역팀 김하제 과장은 이와관련 “냄새 배출원 단위는 각종 관련 설비 용량의 기준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산출돼야 한다”며 “하지만 축사 환경에 따라서는 많은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초자료 확보 및 데이터 신뢰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돈협회는 이에따라 국립환경과학원과 별도로 양돈장 냄새 배출원 단위 산정을 위한 현장 조사 연구용역을 곧 실시, 환경부 방침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가축분뇨 정화방류 확대 '제동'

가축분뇨 정화방류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기 다른 시각으로 접근, 양돈농가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마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화방류 확대라는 정부의 가축분뇨 정책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완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E/L 농장 김정기 대표는 이와관련 “대법원 마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만큼 법률적 대응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소송은 포기했다”며 “이로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도 크다” 밝혔다.

실제로 김정기 대표는 기존에 액비살포 형태로 이뤄져 왔던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정화방류로 전환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정화방류가 가능한 농장 입지와 주변의 다른 지역 사례를 감안할 때 정화방류 허가 획득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 였다.

하지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던 완주군이 공사완공 무렵 불허를 결정하며 12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용과 함께 3억원의 소송 비용까지 손해를 보게 됐다.

전문가들은 김정기 대표와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가축분뇨 정화방류 확대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정화방류를 시도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의해 거부당하는 양돈농가 사례들이 이미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사법부까지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김정기 대표는 “한돈협회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행정기관과 소통도 원활했지만 정화방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일반 농가들은 어려움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이에대해 “정부와 지자체 엇박자 행정의 대표적 사례다. 지자체가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기준 13% 수준인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5%까지 확대하겠다고 일정 수준 규모 이상 양돈농가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 왔다.

## 제주도, 돼지열병 항원 혼입 백신 확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의 한 종돈장에서 돼지열병(CSF) 항체가 검출되면서 도와 관내 양돈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경우 사독백신을 희망하는 농장에 한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돈장은 비접종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돈장 돼지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나온 것입니다(70두 검사 중 7두 항체 양성).

조사 결과 사용 중인 일본뇌염 백신(녹십자수의약품, 제조번호 122JEV01Z)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유전자검사(PCR) 결과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제조 과정에서 돼지열병 항원이 혼입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현재 항원 함량과 병원성 유무 등에 대해서 추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도는 해당 종돈장에 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혈액, 분변, 약품 등 추가 시료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돼지 및 환경 등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항원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는 또한, 해당 백신에 대해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이미 농장에 공급된 백신에 대해서는 긴급 회수조치에 나섰습니다. 제주시 관내 양돈농가 162호에 9,055병이 공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수거된 백신은 245병 정도입니다.

아울러 도는 5일부터 해당 업체 생산 양돈예방백신(생독)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도내 유통 중인 돼지용 백신 12종을 긴급 수거해 추가 오염여부 등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해당 백신을 제조한 녹십자수의약품에서 생산하는 양돈질병 백신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로 도내 양돈장의 돼지질병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일본뇌염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백신을 회수하고 도의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산란계 농가들, 적정사육면적 확대 '법적 대응' 예고



산란계 농가들이 정부가 산란계 케이지 적정사육면적 확대를 기존농가들까지 적용하는 것과 관련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최근 회원들을 중심으로 사육면적확대에 대한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란계 케이지 적정사육면적 확대는 지난 2018년 9월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동물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며 이뤄졌다.

산란계 사육 면적을 수당 0.05㎡에서 0.075㎡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당시 사육 마릿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규 허가 농장에게만 우선적으로 적용한 뒤 기존 농가들은 7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형태로 진행됐다.

7년의 유예기간이 지나 당장 내년 9월 기존 농가들도 처벌 대상이 되자 농가들의 불만이 커졌고 법의 소급 적용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이에 앞서 이사회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약 20 명을 중심으로 한 헌법 소원에 약 400~500명에 달하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단합된 모습으로 농가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산란계 농가는 “살충제 사건 이후 계란 산란일자 표기, 식용란선별포장업 등이 만들어지고 이번에는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라는 또 하나의 과도한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정책은 소급적용이면서 농가에 대한 재산권 침해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많은 농가들이 변경된 사육면적 확대를 위해 케이지를 새로 건립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